

정 관

주식회사 에프앤에프홀딩스
F & F Holdings CO., LTD

【회사 정관】

개정 2003 년 3 월 14 일

개정 2009 년 3 월 20 일

개정 2012 년 3 월 26 일

개정 2014 년 3 월 14 일

개정 2019 년 3 월 15 일

개정 2021 년 3 월 26 일

개정 2022 년 3 월 25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에프앤에프홀딩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F & F Holdings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
4. 수출입업
5. 기획, 회계, 법무,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위탁업무 지원 사업
6. 자회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서비스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업
8.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9.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창고업 및 개발업
11. 벤처투자 및 기타 금융 투자업
12. 섬유류 및 의류, 약세사리 제조 도소매업
13. 인터넷 관련사업
1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동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5. 음식점업
16. 종합물류서비스업
17. 화장품 제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18.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19. 운송업
20. 인력용역업
21. 포장 및 충전업 등
22.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 결의로 서 필요한 지역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fnf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가 있었

던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해당 종류주식에 대해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해당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9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삭제 2014.3.14)

4. (삭제 2014.3.14)

5. (삭제 2009.3.20)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해외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 제3호에 따른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 제4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지주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를 포함)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 주식(지분 포함), 주식관련 증권 및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정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삭제 2003. 3. 14)

제 9 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당해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중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삭제 2019.3.15)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삭제 2009.3.20)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해외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제3호에 따른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제4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삭제 2009.3.20)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해외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외국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제3호에 따른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제4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5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17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 조 제2 항을 준용한다.

제 18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8 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1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3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 조의 2(집행임원) (삭제 2012.3.16)

제 33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5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조의 2(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투자심의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의 2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제39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9 조의 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0 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의 2(주식의 소각) (삭제 2012.3.16)

제 43 조(배당금의 지급)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된다.

제 44 조(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 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개시일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3. 26.>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5.>

본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